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. 11. 27 선고 2023가단4590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조합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식

변론 종결2024. 10. 30.

판결 선고2024. 11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18,650,000원 및 그 중 374,500,000원에 대하여 2023. 9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.3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, 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2019. 10. 1.

주식회사 D(이하, 소외 회사)에게 550,000,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은 2049. 9. 30.까지,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(이하, 이 사건 대출),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66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(이하, 이 사건 연대보증),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이 2023. 9. 21. 기준 원금 374,500,000원 및 이자 합계 418,650,000원이고, 연체이율이 6.3%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이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 418,650,000원 및 그 중 원금 374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 날인 2023. 9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6.3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가 소외 회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를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가 형식적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그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에 서명날인한 것으로,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다툰다. 살피건대,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그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에 서명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,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,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, 달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의사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항쟁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 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노연주